

##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한다.

### 제4조 【가입 및 해지】

- ① 이 예금의 계좌 개설시 명의인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며,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가입·해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우체국이 지정한 취급 우체국에서 계좌개설이 필요하다.

### 제5조 【가입기간】

- ① 이 예금은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또는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②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한다.
- ③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가입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 제7조 【만기처리방법】

-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1. 이 예금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된다.
  2. 자동 재예치 계약조건은 약정이자율을 제외하고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예치 된다.
  3. 자동 재예치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된다.
  4. 자동 재예치 적용이율은 매 재예치 시점 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IRP형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2.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또는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가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또는 자동재예치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특별중도해지】**

이 예금은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신규 가입일 또는 자동재예치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예치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해당 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③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④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 ⑤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⑥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⑦ 수탁자의 사임
  - ⑧ 계열사내 전직,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
  - ⑨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 ⑩ 가입자의 사망
  - ⑪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 ⑫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사유
-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 ⑪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및 ⑫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사유」에 의한 해지인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적용한다.

### 제13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시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산정되지 않으며 제한이 없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2.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 ② 자동재예치 시 분할 해지 횟수는 새로 산정한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의한 분할해지 시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제14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양도,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 ② 이 예금은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을 통한 전문(電文)으로 거래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 부 칙

이 특약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